

의안번호	2208434
의 퇴 인	장철민의원
회 답 일	2025. 4. 1.
추계번호	25D1121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18세 이상 국민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조 2,699억원, 2031년 2조 2,96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조 4,183억원(연평균 2조 2,837억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 (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)	22,699	22,764	22,842	22,910	22,968	114,183	22,837

주: 1. 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(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
 3. 본 추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18세 이상의 인구 수를 선거인 수로 가정하여 추계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2 제1항(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) 신설	국가는 매년 1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된 정치후원권을 5매씩 지급하여야 함. 다만, 정치후원권을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 연도부터 지급하지 아니함	의무규정
2	안 제24조의2 제3항(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) 신설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·운영	의무규정
3	제59조(조세의 감면)	정치자금 기부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내용을 삭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4조의2제1항 (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) 신설	○	-
2	안 제24조의2제3항 (정치후원권 발행·지급) 신설	X	정치후원권 운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, 소프트웨어, 인력 등의 규모,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제59조(조세의 감면)	X	조세감면 대상에서 정치자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※참고로, 2023년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정치자금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 총액은 390억 2,200만원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계기간 동안의 18세 이상 국민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
 - 개정안은 정치후원권 관련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연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벌금형 선고 건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기로 함
- 본 추계에서는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된 정치후원권의 발행비용은 구체적인 발행 유형(지류, 모바일 등), 유형별 단가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기로 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매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된 정치후원권을 5매씩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본 추계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도별 18세 이상 인구수에 1인당 정치후원권 지급액인 5만원을 곱하여 산출
 - (18세 이상 인구수) 2027년 45,398,467명, 2028년 45,528,657명, 2029년 45,683,791명, 2030년 45,819,545명, 2031년 45,935,326명
 - (1인당 정치후원권 지급액) 추계기간 동안 5만원으로 동일
- 추계결과, 18세 이상 국민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조 2,699억원, 2031년 2조 2,968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조 4,183억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18세 이상 인구수(a, 명)	45,398,467	45,528,657	45,683,791	45,819,545	45,935,326	—
1인당 정치후원권 지급액(b, 만원)	5	5	5	5	5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억원)	22,699	22,764	22,842	22,910	22,968	114,183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각 연도별 18세 이상의 인구수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